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2300 사회보장비	14,032,354	10,526,926	3,505,428	[국 7,735,593] [도 1,712,652]
2310 사회복지	14,032,354	10,526,926	3,505,428	[국 7,735,593] [도 1,712,652]
2311 사회복지사업	5,269,394	5,162,108	107,286	[국 4,074,976] [도 527,853]
100 경상예산	114,773	42,711	72,062	
120 경상적경비	114,773	42,711	72,062	
201 일반운영비	17,735	14,762	2,973	
	17,735	14,762	2,973	01 일반운영비
				1. 일반수용비
				○부서운영 기본사무용품비 = 6,675
				○총액계상 = 2,960
				○시각장애인 점자 교육
				10,000 X 50부 X 1회 = 500
				○장애인 자동차 식별 표지
				800 X 500부 X 1회 = 400
				○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식별 표지
				1,000 X 200부 X 1회 = 2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				4. 운영수당
				○총액계상 = 2,500
				6. 급량비

				○총액계상	=	2,500
				7. 임차료		
				○보훈가족 유적 및 전적지 순례 차량 임차 (특수시책)		
				400,000 X 3대 X 1회	=	1,200
				9. 시설장비유지비		
				○장애인 복지후생관 유지비		
				10,000 X 80㎡	=	800
202	3,000	5,073	△2,073			
여비						
	3,000	5,073	△2,073	01 국내여비		
				○총액계상 (4명)	=	3,000
203	3,000	0	3,000			
업무추진비						
	3,000	0	3,00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		
				○장애인 재활등 사회복지 대책추진	=	3,0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206 재료비	7,908	12,046	△4,138	
	400	4,020	△3,620	01 재료비
				○충훈탑 주변 풀베기 관리
				20,000 X 10㎡ X 2회 = 400
	7,508	8,026	△518	02 일시사역인부임
				○국민기초생활보장 전산입력 인부임
				24,200 X 60일 X 4회 = 5,808
				○중증중복장애인 이.미용
				- 이 용 8,000 X 50명 X 2회 = 800
				- 미 용 15,000 X 15명 X 4회 = 900

304	일반보상금	16,630	10,830	5,800								
		6,850	4,400	2,450	01	사회보장적수혜금						
						○행여사망자 장제비						
						500,000	X	5명	=	2,500		
						○행여자 및 부양인 귀가 조치 여비						
					군	30,000	X	40명	X	1회	=	1,2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	출	기	초					
					읍면	30,000	X	50명	X	1회	=	1,500	
						○저소득 보훈가족 위문 (3.1절, 현충일, 광복절, 명절)							
						50,000	X	11명	X	3회	=	1,650	
		4,200	3,700	500	09	행사실비보상금							
						○현충일 행사참여 보훈가족 식대							
						5,000	X	400명	X	1회	=	2,000	
						○현충일 행사참여 합창단 악대 실비보상							
						악대	5,000	X	50명	X	2회	=	500
						합창단	5,000	X	50명	X	2회	=	500
						○도단위 행사 참석여비 (보훈가족, 3.1절, 광복절등)							
						30,000	X	20명	X	2회	=	1,200	
		5,580	2,730	2,850	11	기타보상금							
						○민족정기선양 및 애국애족정신 교육강사수당							
						100,000	X	1명	X	2회	=	200	
						○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유족 시상품							
						20,000	X	30명	X	1회	=	600	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				○시각장애인 점자교육 강사수당 (특수시책)
				70,000 X 4회 X 6월 = 1,680
				○의료급여 무수진자 상품권 지급 (특수시책)
				30,000 X 103명 X 1회 = 3,100
307 민간이전	66,500	0	66,500	
	66,500	0	66,500	03 사회단체보조금
				○보훈단체 (정액보조)
				상이군경회 = 10,000
				전몰군경유족회 = 10,000
				전몰군경미망인회 = 10,000
				대한무공수훈자회 = 10,000
				○제11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참가 (신체장애인협회)
				8,000,000 X 1회 = 8,000
				○전남장애인 복지대회참가 (신체장애인협회)
				3,000,000 X 1회 = 3,000
				○중증장애인 현장체험 (신체장애인협회)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				2,000,000 X 1회 = 2,000

				○중증장애인 하계수련대회 (신체장애인협회)
			2,000,000	X 1회 = 2,000
				○장애인 휠체어 마라톤 대회 (신체장애인협회)
			2,500,000	X 1회 = 2,500
				○영호남 시각장애인 친선 산행대회 참가
			600,000	X 1회 = 600
				○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 (시각장애인 협회)
			1,000,000	X 1회 = 1,000
				○시각장애인 흰지팡이 행사 (시각장애인협회)
			800,000	X 1회 = 800
				○시각장애인 도보행사 (시각장애인협회)
			600,000	X 3회 = 1,800
				○청각장애인 친선체육대회 (농아인협회)
			800,000	X 1회 = 800
				○청각장애인 위안행사 (농아인협회)

(장 2000)사회개발비		(관 2300)사회보장비		(항 2310)사회복지	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	(단위 : 천원)	
과	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	출	기 초
					500,000	X	1회 = 500
							○수화경연대회 참가 (농아인협회)
					500,000	X	1회 = 500
							○4.4강진 독립만세운동 84주년 기념행사 지원
					3,000,000	X	1회 = 3,000
200	사업예산	5,149,621	5,114,397	35,224	[국 4,074,976]	[도 527,853]	
210	보조사업	5,148,621	5,051,697	96,924	[국 4,074,976]	[도 527,853]	
202	여비	5,000	5,000	0			
		5,000	5,000	0	01 국내여비		

				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지도점검	
				10,000 X 5명 X 100일	= 5,000
					(국 4,000)
					(도 500)
					(군 500)
206	154,330	282,400	△128,070		
재료비					
	7,789	13,860	△6,071	01 재료비	
				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	= 7,789
					(국 6,231)
					(도 779)
					(군 779)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 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146,541	268,540	△121,999	02 일시사업인부임
				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
				= 143,600
				(국 114,880)
				(도 14,360)
				(군 14,360)
				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(14명)
				= 2,941
				(국 2,353)
				(도 294)
				(군 294)
301	159,239	143,324	15,915	일반보상금
	3,070	1,409	1,661	01 사회보장적수혜금
				○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(26명)
				= 3,070
				(국 2,456)
				(군 614)
	128,269	141,915	△13,646	02 장학금및학자금
				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(191명)
				= 125,221
				(국 100,177)
				(도 12,522)
				(군 12,522)
				○장애인 자녀 교육비 (5명)
				= 3,048
				(국 2,438)
				(도 305)
				(군 305)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	27,900	0	27,900	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
				○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(12명) = 27,900
				(국 13,950)
				(군 13,950)
307 민간이전	4,830,052	4,620,973	209,079	
	4,264,412	4,502,173	△237,761	01 의료및구료비
				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(3,602명) = 3,745,695
				(국 2,996,556)
				(도 374,569)
				(군 374,570)
				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(3,410명) = 257,490
				(국 205,992)
				(도 25,749)
				(군 25,749)
				○장애인 의료비 (779명) = 58,125
				(국 46,500)
				(도 11,625)
				○장애수당 (332명) = 199,200
				(국 139,440)
				(도 29,880)
				(군 29,880)
				○장애인등록진단비 (55명) = 1,202
				(국 601)
				(도 301)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				○장애아동 부양수당 (5명)	= 2,700
					(국 1,890)
					(도 405)
					(군 405)
	150,000	0	150,000	02 민간경상보조	
				○자활후견기관 운영비 (1개소)	= 150,000
					(국 105,000)
					(도 15,000)
					(군 30,000)
	415,640	118,800	296,840	05 민간위탁금	
				○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 민간위탁	= 256,000
					(국 204,800)
					(도 25,800)
					(군 25,800)
				○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	= 159,640
					(국 127,712)
					(도 15,964)
					(군 15,964)
220	1,000	62,700	△61,700	자체사업	
302	1,000	0	1,000	이주및재해보상금	
	1,000	0	1,000	02 재해보상금	
				○이재민 재해 보상금	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1)사회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 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	
				20,000 X 50명 X 1회	= 1,000
400 예비비등	5,000	5,000	0		
420 기타	5,000	5,000	0		
308 자치단체등이전	5,000	5,000	0		
	5,000	5,000	0	05 자치단체간부담금	
				○장애인복지기금 도출연금	= 5,000

--	--	--	--	--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2312 가정복지사업	8,427,699	5,091,570	3,336,129	[국 3,656,390] [도 1,150,235]
100 경상예산	157,746	93,724	64,022	
120 경상적경비	157,746	93,724	64,022	
201 일반운영비	25,846	30,054	△4,208	
	22,846	26,754	△3,908	01 일반운영비
				1. 일반수용비
				○총액계상 = 2,096
				○이동목욕차 운영 물품
				25,000 X 100회 = 2,500
				4. 운영수당
				○총액계상 = 750
				6. 급량비
				○총액계상 = 2,000
				7. 임차료
				○각종 행사 차량 임차료

				소년소녀 가장 및 시설아동 수련회
--	--	--	--	--------------------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
				300,000 X 2대 X 2회 = 1,200
				노인의날 및 어버이날 행사
				150,000 X 10개면 X 2회 = 3,000
				시설아동 사생대회 참가
				300,000 X 1회 = 300
				9. 시설장비유지비
				○총액계상 = 11,000
	3,000	3,300	△300	02 행사지원비
				○어버이날, 노인의날 흥화
				3,000 X 1,000명 = 3,000
202 여비	6,000	5,880	120	
	6,000	5,880	120	01 국내여비
				○총액계상 (4명) = 6,000
203 업무추진비	5,000	0	5,000	
	5,000	0	5,000	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
				○노인 및 아동등 가정복지업무 추진 = 5,0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--	--	--	--	--

과목	예산액	전(기)년(도)정(산)액	비(중)교(감)액	산출기초
301 일반보상금	98,900	57,790	41,110	
	23,880	9,280	14,600	01 사회보장적수혜금
				○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결연금 지원
				20,000 X 7명 X 12월 = 1,680
				○아동복지시설 위문
				200,000 X 3회 = 600
				○홀로사는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
				100,000 X 40명 X 1회 = 4,000
				○장수노인 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
				100,000 X 40명 X 1회 = 4,000
				○노인복지시설 위문
				200,000 X 5회 = 1,000
				○화장 장려금 지원 (특수시책)
				60,000 X 25명 X 1회 = 1,500
				○이미용업소 경로우대제 (특수시책)
				5,000 X 600명 X 2회 = 6,0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(기)년(도)정(산)액	비(중)교(감)액	산출기초
				○불우노인 영정제작 지원 (특수시책)
				100,000 X 30명 X 1회 = 3,000
				○90세이상 장수노인 지팡이 지급 (특수시책)
				70,000 X 30명 X 1회 = 2,100
	55,120	45,260	9,860	09 행사실비보상금
				○어버이날 행사

				초청자 실비보상	5,000	X	300명	X	11읍면	=	16,500
				공연진 실비보상	2,000,000			X	1단체	=	2,000
				○노인의날 행사							
				초청자 실비보상	5,000	X	300명	X	11읍면	=	16,500
				공연진 실비보상	2,000,000			X	1단체	=	2,000
				○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자 실비보상							
				15,000	X		60명	X	1회	=	900
				○아동보육관련 교육 참석자 여비보상							
				30,000	X		30명	X	3회	=	2,700
				○소년소녀가장 시설아동 수련회 개최							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								
				100,000	X	80명	X	1회	=	8,000		
				○소년소녀가장 시설여고생 예비부모 교육								
				25,000	X	20명	X	1회	=	500		
				○시설아동 문화행사 백일장 참가여비 보상								
				25,000	X	20명	X	1회	=	500		
				○효행 및 노인복지 유공 표창자 선진지 견학 (특수시책)								
				60,000	X	30명	X	2일	=	3,600		
				○이동목욕 자원 봉사자 실비보상								
				5,000	X	4명	X	8회	X	12월	=	1,920
	19,900	3,250	16,650	11 기타보상금								
				○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표창 시상품								
				50,000	X	15명	X	1회	=	750		
				○효행자등 표창시상품								

				20,000	X	15명	X	1회	=	450
				○모범노인, 단체, 노인복지 유공등 표창시상품						
				100,000	X	5개소	X	1회	=	5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				○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
				75,000 X 12월 = 900
				○보육 및 아동시설종사자 직무 교육 강사수당
				75,000 X 2개소 X 2회 = 300
				○노인의날 행사 시상품
				100,000 X 5종목 X 2회 = 1,000
				○경로효친 시범마을지정 시상품 (특수시책)
				1,000,000 X 11개마을 X 1회 = 11,000
				○노부모 부양가정 선정 시상품
				100,000 X 50세대 X 1회 = 5,000
307 민간이전	22,000	0	22,000	
	22,000	0	22,000	03 사회단체보조금
				○대한노인회 강진지회 (정액보조)
				2,500,000 X 1단체 X 4회 = 10,000
				○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
				12,000,000 X 1개소 = 12,0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200 사업예산	8,215,953	4,943,846	3,272,107	[국 3,656,390] [도 1,150,235]
210 보조사업	7,479,649	4,582,316	2,897,333	[국 3,656,390] [도 1,150,235]
301 일반보상금	3,617,051	2,624,818	992,233	
	3,608,496	2,618,531	989,965	01 사회보장적수혜금
				○경로당 운영비 지원 = 99,360
				(국 49,680)
				(도 24,840)
				(군 24,840)
				○국고미지원 경로당
				운영비 44,000 X 160개소 X 12월 = 84,480
				(군 84,480)
				단방비 300,000 X 160개소 X 2회 = 96,000
				(군 96,000)
				○국고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차액지원
				단방비 50,000 X 120개소 X 2회 = 12,000
				(군 12,000)
				○경로연금 지원 = 2,007,885
				(국 1,405,519)
				(군 602,366)
				○가정봉사원 파견사업 (1개소) = 89,000
				(국 35,600)
				(도 28,700)
				(군 28,700)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				○주간보호사업 (1개소) = 60,000
				(국 24,000)
				(도 18,000)
				(군 18,000)
				○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(227명) = 119,245
				(국 59,623)
				(도 29,811)
				(군 29,811)

				○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	(국 1,500)
				20,000 X 23명 X 12월	= 5,520
					(도 2,760)
					(군 2,760)
				○학력정기 요보호아동 건강검진	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기초	
					30,770 X 13명	= 400
						(국 200)
						(군 200)
		8,555	6,287	2,268	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	
					○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	= 8,555
						(국 8,555)
307	민간이전	2,291,288	1,897,498	393,790		
		2,291,288	1,897,498	393,790	02 민간경상보조	
					○노인일거리 마련사업 (1개소)	= 4,800
						(국 2,400)
						(도 1,200)
						(군 1,200)
					○아동복지시설 운영 (92명)	= 434,633
						(국 304,243)
						(도 65,195)
						(군 65,195)
					○종사자 특별수당	
					85,000 X 14명 X 12월	= 14,280
						(도 14,280)
					○시설아동 생필품 구입	
					20,000 X 92명 X 12월	= 22,080
						(도 11,040)
						(군 11,040)
					○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 (109명)	= 1,024,227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
				(국 569,015)
				(도 227,606)
				(군 227,606)
				○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(371명) = 310,080
				(국 155,040)
				(도 77,521)
				(군 77,519)
				○보육시설 만5세아 무상보육 (248명) = 444,590
				(국 222,295)
				(도 111,148)
				(군 111,147)
				○보육시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= 28,220
				(국 14,110)
				(도 7,055)
				(군 7,055)
				○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= 1,382
				(국 864)
				(도 259)
				(군 259)
				○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(6개소) = 6,996
				(국 4,372)
				(도 1,312)
				(군 1,312)
308 자치단체등이전	3,924	0	3,924	
	3,924	0	3,924	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
				○결식아동 급식비
				2,200 X 5명 X 357일 = 3,924
				(국 1,962)
				(도 981)
				(군 981)
401	1,552,386	0	1,552,386	

시설비및부대비	1,516,067	0	1,516,067	01 시설비
				○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
				1,552,386,000 X 개소 X 97.66/100 = 1,516,067
				(국 758,033)
				(도 379,017)
				(군 379,017)
	30,730	0	30,730	02 감리비
				○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
				1,552,386,000 X 1.98/100 = 30,730
				(국 15,365)
				(도 7,683)
				(군 7,682)
	5,589	0	5,589	03 시설부대비
				○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
				1,552,386,000 X 0.36/100 = 5,589
				(국 2,794)
				(도 1,398)
				(군 1,397)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 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출 기초
402 민간자본이전	15,000	60,000	△45,000	
	15,000	0	15,000	02 민간대행사업비
				○가족납골시설 설치지원 = 15,000
				(국 7,500)
				(군 7,500)
220 자체사업	736,304	361,530	374,774	
401 시설비및부대비	581,304	184,530	396,774	
	564,027	184,206	379,821	01 시설비
				○도암면 복지회관 개보수
				42,312,000 X 98.92/100 = 41,855
				○칠량면 경로식당 토지매입
				30,250 X 1,289㎡ = 38,992

				○작천면 경로당 신축					
				설 계 비	200,000,000	X	3.21/100	=	6,400
				공 사 비	200,000,000	X	93.15/100	=	186,300
				○옴천 경로당 신축					
				토지매입	14,388	X	1,390㎡	=	20,0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 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
				설 계 비 280,000,000 X 2.92/100 = 8,176
				공 사 비 280,000,000 X 93.68/100 = 262,304
	13,364	0	13,364	02 감리비
				○작천 경로당 신축
				200,000,000 X 2.93/100 = 5,860
				○옴천 경로당 신축
				280,000,000 X 2.68/100 = 7,504
	3,913	324	3,589	03 시설부대비
				○도암면 복지회관 개보수
				42,312,000 X 1.08/100 = 457
				○작천 경로당 신축
				200,000,000 X 0.72/100 = 1,440
				○옴천 경로당 신축
				280,000,000 X 0.72/100 = 2,016
402 민간자본이전	155,000	115,000	40,000	
	155,000	115,000	40,000	01 민간자본보조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2)가정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				○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
				5,000,000 X 12세대 = 60,000
				○시범가족 납골묘 설치지원 (특수시책)
				5,000,000 X 11기 = 55,000
				○성전 상월 노인당 개보수
				10,000,000 X 1식 = 10,000
				○마량 서중 노인당 개축
				30,000,000 X 1개소 = 30,000
400 예비비등	54,000	54,000	0	
420 기타	54,000	54,000	0	
308 자치단체등이전	4,000	4,000	0	
	4,000	4,000	0	05 자치단체간부담금
				○노인복지기금 도출연금 = 4,000
702 기금전출금	50,000	50,000	0	
				○노인복지기금 군 출연금 = 50,0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3)여성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2313 여성복지사업	134,199	112,314	21,885	[국 4,227] [도 34,564]
100 경상예산	50,500	27,400	23,100	

총액	50,500	27,400	23,100	
201 일반운영비	6,050	5,130	920	
	6,050	5,130	920	01 일반운영비
				1. 일반수용비
				○총액계상 = 1,530
				○여성백일장대회 원고지 및 필기구
				2,000 X 100명 = 200
				4. 운영수당
				○여성백일장대회 심사 위원회 수당
				40,000 X 3명 X 1회 = 120
				6. 급 량 비
				○총액계상 = 1,500
				7. 임 차 료
				○ 각종 행사 참석 차량 임차

(장 2000)사회개발비		(관 2300)사회보장비		(항 2310)사회복지		(세항 2313)여성복지사업		(단위 : 천원)	
과	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	출	기	초	
									여성자원 봉사대회
					300,000	X	1대	X	1회 = 300
									여성주간 행사
					300,000	X	1대	X	2일 = 600
									전남 여성대회
					300,000	X	1대	X	1일 = 300
									여성단체 영호남 및 남양주시 방문
					300,000	X	1대	X	2일 = 600
									모자가구주 선진지 견학
					300,000	X	1대	X	2일 = 6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3)여성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
				100,000 X 10종 X 1회 = 1,000
				○여성예능경연대회 참가
				40,000 X 50명 X 1회 = 2,000
301 일반보상금	30,950	12,550	18,400	
	3,300	300	3,000	01 사회보장적수혜금
				○요보호 여성 발생 귀가여비
				50,000 X 6명 = 300
				○저소득모자가정 생신 챙겨드리기
				50,000 X 60명 = 3,000
	22,200	8,650	13,550	09 행사실비보상금
				○각종행사 참석 실비보상
				모자가구주 사회적응 교육
				30,000 X 10명 X 2회 = 600
				모자가구주 선진지 견학
				50,000 X 60명 X 1회 = 3,000
				전국여성 대회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3)여성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
				150,000 X 4명 X 1회 = 600

				도주관 교육 및 세미나						
				30,000	X	100명	X	1회	=	3,000
				여성주간 행사						
				30,000	X	300명	X	1회	=	9,000
				향토음식전시회 출품자						
				25,000	X	20명	X	1회	=	500
				여성자원 봉사자 대회						
				10,000	X	300명	X	1회	=	3,000
				동거부부 합동 결혼식						
				1,000,000	X	2쌍	X	1회	=	2,000
				여성자립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						
				20,000	X	25명	X	1회	=	500
	5,450	3,600	1,850	11 기타보상금						
				○각종 교육 감사 수당						
				어머니와 함께하는 교육						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3)여성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	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△감	산	출	기	초
					150,000	X	1회	= 150
					여성취미교실 운영			
					100,000	X	12회	= 1,200
					여성교양 교육			
					100,000	X	10회	= 1,000
					여성기술 교육			
					100,000	X	10회	= 1,000
					마을단위 순회교육			

				100,000	X	8회	=	800
				여성자립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				
				150,000	X	2회	=	300
				○여성주간행사 (백일장대회) 시상금				
				장려상	50,000	X	6명	= 300
				우수상	100,000	X	2명	= 200
				최우수상	200,000	X	1명	= 200
				대상	300,000	X	1명	= 300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3)여성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기초
200 사업예산	77,956	79,914	△1,958	[국 4,227] [도 34,564]
210 보조사업	77,956	75,914	2,042	[국 4,227] [도 34,564]
301 일반보상금	62,456	65,514	△3,058	
	42,456	42,014	442	01 사회보장적수혜금
				○재가모부자가정 지원 (9명) = 5,285
				(국 4,227)
				(도 529)
				(군 529)
				○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(80세대) = 28,800
				(도 14,400)
				(군 14,400)
				○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(2명) = 219
				(도 109)
				(군 110)
				○저소득모부자가정중고생 교통비
				192,000 X 6명 = 1,152
				(도 576)
				(군 576)
				○저소득장애모부자가정 생활용품지원
				500,000 X 2세대 = 1,000
				(도 500)
				(군 500)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3)여성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				1,000,000 X 6명 = 6,000 (도 3,000) (군 3,000)
	20,000	23,500	△3,500	11 기타보상금
				○여성정보보호능력배양 교육
				40,000 X 50명 = 2,000 (도 1,000) (군 1,000)
				○여성직업훈련
				300,000 X 60명 = 18,000 (도 9,000) (군 9,000)
307 민간이전	15,500	10,000	5,500	
	15,500	10,000	5,500	02 민간경상보조
				○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 (1개소)
				3,000,000 X 1개소 = 3,000 (도 900) (군 2,100)
				○푸드뱅크 운영
				5,000,000 X 1개소 = 5,000 (도 1,500) (군 3,500)
				○마을단위 부업장려
				3,500,000 X 1개소 = 3,500 (도 1,050)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3)여성복지사업 (단위 : 천원)

과목	예산액	전년도 (기정) 예산액	비교 증감	산출 기초
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

		예 산 액		(군 2,450)
				○지역특산품 판로촉진 (1개소) = 4,000
				(도 2,000)
				(군 2,000)
400	예비비등	5,743	5,000	743
420	기타	5,743	5,000	743
308	자치단체등이전	5,743	5,000	743
		5,743	5,000	743 05 자치단체간부담금
				○여성발전기금 도출연금 = 5,743

(장 2000)사회개발비 (관 2300)사회보장비 (항 2310)사회복지 (세항 2314)의료보호사업 (단위 : 천원)

과 목	예 산 액	전 년 도 (기 정) 예 산 액	비 교 증 △ 감	산 출 기 초
2314 의료보호사업	201,062	160,934	40,128	
400 예비비등	201,062	160,934	40,128	
420 기타	201,062	160,934	40,128	
701 기타회계전출금	201,062	160,934	40,128	
				○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= 201,062

